HRM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2.04.18. 개정 2022.06.20.

- 제1조(목적) ① 본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"본 대학") 학칙 제55조에 의거 본교의 HRM센터(이하 "센터" 라 한다)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HRM센터는 대학 교원 및 직원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천함으로써 학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센터 업무 전반에 적용하되, 다른 상위 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따라 인사업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전임교원 이상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
- ② 센터장은 HRM센터를 총괄하며, 본 센터를 대표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센터에는 센터장과 소속 교수,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- 제4조(기능) ① 센터는 대학의 건학이념, 비전과 사명,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의 공정한 인사제도 개정과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본 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의 자문과 심의는 사안에 따라 교원 인사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시한다.

제5조(업무) 센터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HRM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
- ② 교원 및 직원의 인사제도 개정과 관리
- ③ 교원 채용을 위한 운영지원
- ④ 교원 승진을 위한 운영과 관리지원
- ⑤ 교원 및 직원 평가를 위한 규정 개정과 관리
- ⑥ 교원 평가를 위한 운영지원
- ⑦ 센터 업무 운영 성과분석,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
- ⑧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